

# 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

의안	4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7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 안 이 유

“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”에 따라 작성한 『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』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## 2. 주 요 내 용

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

가. 취득은 토지가 총 2건 34,183㎡에 548,928천원으로

1) 용평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부지 매입(문화관광과)

⇒ 노동리 64번지 외 14필지 30,591㎡ 411,837천원이고,

2) 공유재산집단화 부지 매입(재무과)

⇒ 진부면 하진부리 349번지 외 6필지 3,592㎡ 137,091천원임.

나. 처분이 총 1건 508,498㎡에 1,601,170천원인 바 그 내역은

알펜시아리조트 편입부지 매각

⇒ 도암면 용산리 153-4번지 외 4필지 508,498㎡ 1,601,170천원임

## 3. 관 계 법 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
## 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

### 총괄표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	변경전			추가			변경후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합계	토지	12	99,155	2,047,713	2	34,183	548,928	14	133,338	2,596,641
		건물	1	600	310,500	-	-	-	1	600	310,500
		기타				-	-	-	-	-	-
	매입	토지	8	66,366	1,372,693	2	34,183	548,928	10	100,549	1,921,621
		건물							-	-	-
		기타							-	-	-
	교환	토지	4	32,789	675,020				4	32,789	675,020
		건물							-	-	-
		기타							-	-	-
	기타	토지							-	-	-
		건물	1	600	310,500				1	600	310,500
		기타							-	-	-
처분	합계	토지	4	34,998	231,815	1	508,498	1,601,170	5	543,496	1,832,985
		건물				-	-	-	-	-	-
		기타				-	-	-	-	-	-
	매각	토지				1	508,498	1,601,170	1	508,498	1,601,170
		건물							-	-	-
		기타							-	-	-
	교환	토지	4	34,998	231,815				4	34,998	231,815
		건물							-	-	-
		기타							-	-	-
	기타	토지							-	-	-
		건물							-	-	-
		기타							-	-	-

# 처분대상 재산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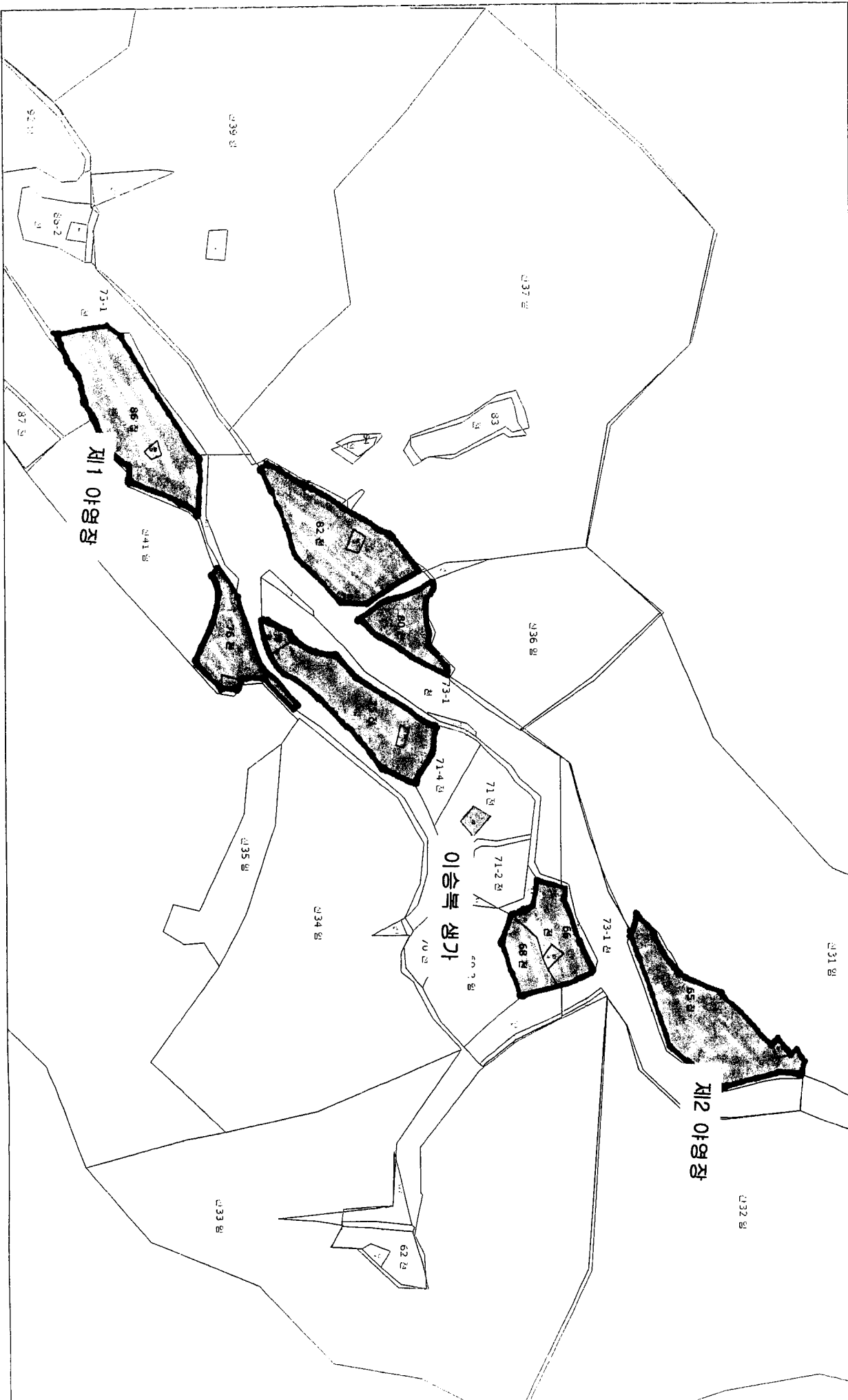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표시			처분대상 수 량	과표 또는 공시지가	처 분 사 유	취 득 희망자
	지목	소재지	지적				
<b>처분 총합계</b>			<b>508,498</b>	<b>508,498</b>	<b>1,601,170</b>		
<b>토지 매각</b>			508,498	508,498	1,601,170		
1	임	용산리 153-4	4,493	4,493	27,003	알펜시아 리조트 편입부지	강원도개발공사
	임	용산리 206-1	807	807	32,441		
	임	용산리 산75-11	6,982	6,982	38,192		
	임	용산리 산206-4	4,379	4,379	13,268		
	임	용산리 산206-5	491,837	491,837	1,490,266		

## 附表 및 參考資料

일련 번호	사 업 명	재산의 표시	페이지
1	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 부지	용평면 노동리 64번지 외	1 ~ 9
2	군유재산집단화 사업 부지	진부면 하진부리 349번지 외	10 ~ 11
3	알펜시아리조트 편입 매각 부지	도암면 용산리 153-4번지 외	12 ~ 19

용평면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부지  
(노동리 64번지 외 14필 30,591㎡)



축척

1:3758


# 토지대장열람조서

<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 고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m <sup>2</sup> )	성명	주소	
소 계	15필지		30,591			
용평 노동리	64	잡종지	122	강원도	춘천시 봉의동	
	65	잡종지	5,537			
	66	전	2,003			
	67	대	129			
	68	전	1,283			
	74	대	99			
	75	전	4,628			
	76	전	2,350			
	77	대	136			
	78	전	364			
	80	전	2,159			
	81	대	139			
	82	전	5,236			
	86	전	6,317			
85	대	89	서옥자	진부면 상진부리 549	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7. 11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



#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

---



#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

- 노동계곡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겨울 트래킹의 명소 계방산, 이승복 기념관 등 매년 37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으나, 화장실, 야영장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.
-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, 웰빙투어를 지향한 코테지 설치, 야영장정비, 화장실 신축 등 부대시설 설치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고품격 고객지향형 테마관광지 조성

## **사업개요**

-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(노동계곡 일원)
- 면 적 : 30,591㎡(9,254평) 도유지(30,502㎡), 사유지(89㎡)
- 기 간 : 2006. 7. ~ 2008. 12(2년6개월)
- 사 업 비 : 2,000백만원(국비 1,000, 지방비 1,000)
- 사업내용
  - 캠핑시설 : 캐빈(2동), 황토집(15동), 캐라반(3동), 야영장 조경 등
  - 부대시설 : 족구, 배구, 농구장 등 각 1식, 야외공연장(1식)
  - 기타 편의시설 : 화장실(샤워장) 신축(2동), 급수(취사)시설 신축(2동), 공원등 설치 등

## **주변 관광자원 현황**

【지구내】 이승복기념관, 계방산등산로,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, 한국앵무새학교, 방아다리약수, 오대산국립공원, 노동먹거리촌 등

【지구외】 용평리조트, 보광휘닉스, 삼양대관령목장, 자생식물원, 양떼목장, 허브나라, 이효석문학관, “웰컴투 동막골”촬영장 등.



## 세부추진계획

### □ 야영장 및 주변 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(1차 사업)

○ 기 간 : 2006. 07 ~ 2007. 12월

○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일원

○ 면 적 : 30,591㎡(9,254평)

○ 사 업 비 : 1,000백만원(국비 500, 도비 150, 군비 350)

○ 사업내역

【캠핑시설】 케빈(15평형) 2동, 케라반 3동, 기본 및 실시설계 1식,  
야영장 부지정비 1식 등

【부대시설】 오수처리시설 1식, 산책로 조성(4km), 자연그늘 조성 1식,  
족구, 배구장 각 1식, 주차장 조성, 공원등 설치 등

【편의시설】 화장실 1동(20평). 급수·취사시설 1식 등.

○ 사업진행 절차

① 사업지 사용 협의(강원도), '06년 추경예산반영 : '06. 07월중

② 기본(기획)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: '06. 08 ~ 12월중

③ 진입로 보수, 부지조성(성토, 평탄작업), 조경 등 : '07. 9월중

○ 캠핑장 운영 : '08. 1월부터

- 캠핑장 운영(평창군) : 1~2년간 직영체제 운영(사용료 징수)

### 노동계곡 캠핑장 부지매입

○ 매입면적 : 30,591㎡(9,254평)

- 도유지 14필지 30,502㎡(9,227평), 사유지 1필지 89㎡(27평)

○ 매입금액 : 700,023천원(감정평가 예상금액)

○ 매입방법 : 예산범위 내에서 분납형식으로 매입(10년까지 가능)

○ 매입사유

- 현 부지는 대부분이 도유지로 화장실 등 영구시설물 설치시 강원도에  
기부채납 후 설치가 가능함으로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 
매입 필요.

□ 전통 황토방 집단촌 등 추가 시설 마무리 (2차 사업)

○ 2014 동계올림픽, 최근 한류열풍 등을 활용한 전통 황토방 집단촌을 조성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유치를 위한 체험형 고원 휴양지 조성

○ 사업기간 : 2008. 1 ~ 12.

○ 사업위치 : 캠핑장 부지 내

○ 사업내역

【캠핑시설】 황토집 15동(약10~15평형)

【부대시설】 도로개설(2km), 야외 공연장(200평)

○ 사업비 : 약 1,000백만원

※ 2007년도에 국비 5억 추가 확보 예상

## 부지확보방안

【제 1 안】 도유지 양여 협의 후 사용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경우

○ 대상 부지 : 도유지 14필지(30,502㎡/9,227평)

○ 부지 사용계획

- 현 청소년 야영장을 활용하여 부지정비, 화장실(샤워장) 신축, 급수대 등 시설물 설치 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(공용, 공공용)

※ 당초계획대로 영구 시설물 설치 등 부지사용 가능

☞ 근거 :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1호(양여)

【제 2 안】 도·군유지 교환

○ 도유지와 군유지 교환 후 행정재산 등으로 관리

- 도유지 교환대상 필지에 비해 군유지가 부족할 경우 도유지 일부를 제외하고 교환 추진.

○ 교환대상 예정 부지

(단위 : m<sup>2</sup>/천원)

구분 (소유자)	위 치	지번	지목	지 적 (m <sup>2</sup> )	공시지가	감평예상액	토지사용 실 태
소 계		14필지		30,502	288,344	671,810	
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		86	잡	6,317	63,170	157,925	제1야영장
		76	전	2,350	25,380	58,750	나지
		77	대	136	1,917	3,400	"
		78	전	364	3,932	9,100	"
		82	전	5,236	54,978	130,900	"
		81	대	139	2,043	3,475	"
		80	전	2,159	22,669	53,975	"
		75	전	4,628	48,594	115,700	"
		74	대	99	1,396	2,475	"
		68	전	1,283	2,989	19,245	"
		67	대	129	480	1,935	"
		66	전	2,003	4,206	30,045	"
		64	잡	122	1,220	1,830	제2야영장
		65	잡	5,537	55,370	83,055	제2야영장

구분 (소유자)	위 치	지번	지목	지 적 (m <sup>2</sup> )	공시지가	감평예상액	토지사용 실 태
평창군 노동리		387-1	전	8,850	203,550	442,500	군부대사용
		390	전	476	9,996	23,800	"

☞ 근거 :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

○ 문제점 : 현 군유지(2필지)는 군부대(36사단)에서 훈련장(년 7일 정도 사용)으로 대부 후 사용하고 있어 대부계약 해지가 곤란한 면이 있으나, 노동리 주민들은 계방산 주차장 사용이 시급 하여 현재 군부대에 대부계약 해지 민원을 제기한 상태임

⇒ 무상대부 계약 해지가 않될 경우 향후 도·군유지 교환 후 도에서 군부대와 무상 대부계약 추진

**【제 3 안】 일부매입, 일부 무상대부 허가 후 사용 잡종재산의 경우**

○ 무상대부 면적 : 도유지 14필지(30,502㎡/9,227평)

○ 부지사용계획

-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부지는 매입하고 기타 캐라반, 방갈로 등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부지는 무상대부 허가 후 사용.

- 영구시설물 설치(매입대상) 부지  
: 3필지(86,64,65) / 5,659㎡(1,712평)

☞ 근거 :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(관리 및 처분),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,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(대부기간), 동법 제34조 제1항, 제1호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○ 문제점 : 대부 계약 후 강원도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.

**【제 4 안】 도유지 무상사용 허가(기부채납 조건) 사용 행정재산의 경우**

○ 무상사용 허가 부지 : 도유지 14필지(30,502㎡/9,227평)

○ 부지사용계획

- 제1,2야영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(화장실/샤워장/급수·취사시설)만 설치하여 기부채납 후 사용
- 기타 부지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캐라반, 방갈로 등 이동식 설치와 족구장, 배구장을 조성하여 오토캠핑장으로 사용

☞ 근거 :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, 동법 제7조 제2항(기부채납), 동법 제20조 제3항(사용·수익 허가), 동법시행령 제5조(기부채납),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호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, 동법 제24조 제1호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【제 5 안】 도유지 매입

○ 도유지 매입 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

- 매입방법 :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평가금액에 의한 매입하고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.

○ 매입대상 부지

(단위 : m<sup>2</sup>/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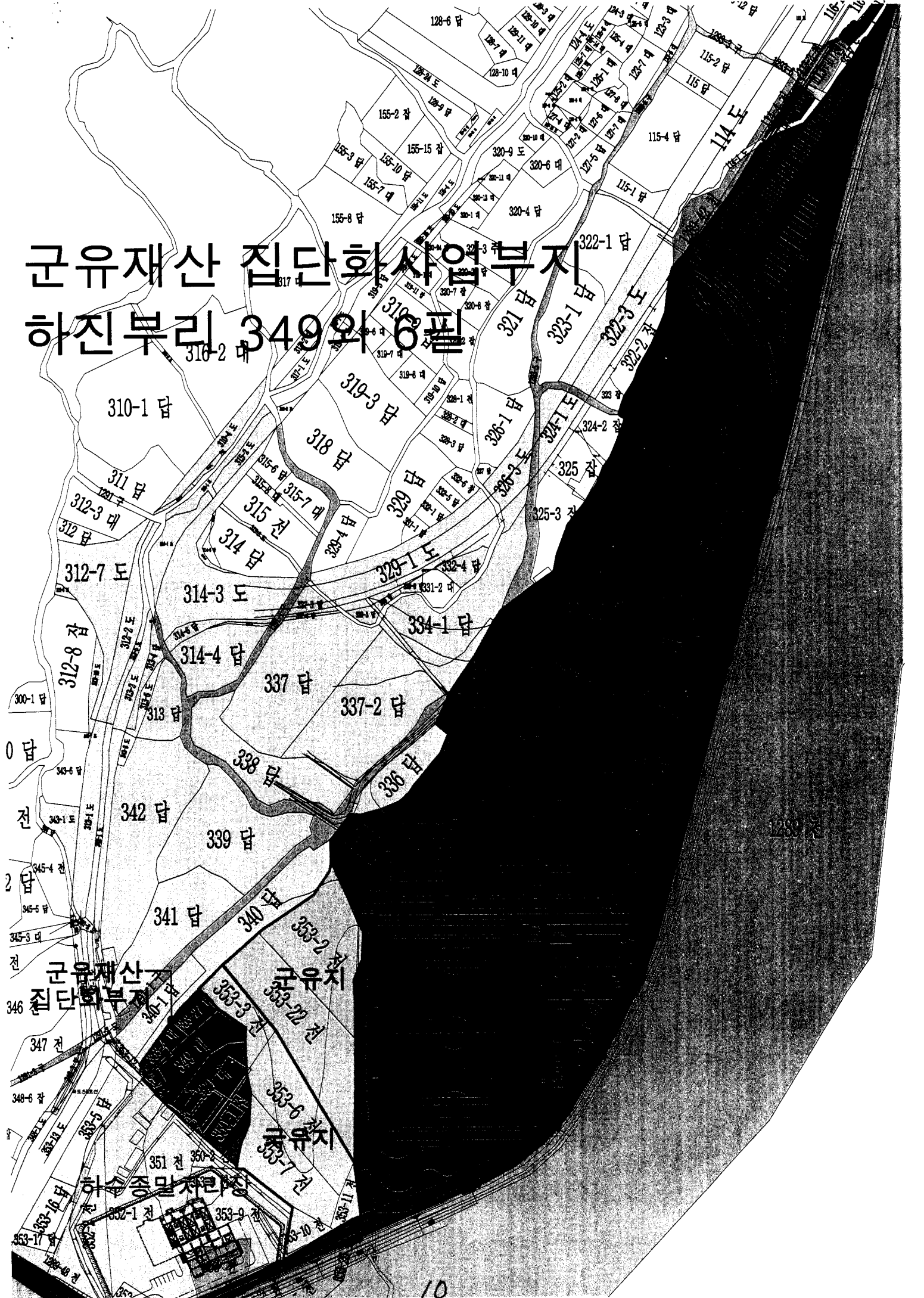
구분 (소유자)	위치	지번	지목	지적 (m <sup>2</sup> )	공시지가	감평예상액	토지사용 실 태
<b>소 계</b>		<b>14필지</b>		<b>30,502</b>	<b>289,679</b>	<b>674,302</b>	
		86	잡	6,317	63,170	157,925	제1야영장
		85	대	87	1,335	2,492	제1야영장
		76	전	2,350	25,380	58,750	나 지
		77	대	136	1,917	3,400	"
		78	전	364	3,932	9,100	"
		82	전	5,236	54,978	130,900	"
	평창군	81	대	139	2,043	3,475	"
강원도	용평면	80	전	2,159	22,669	53,975	"
	노동리	75	전	4,628	48,594	115,700	"
		74	대	99	1,396	2,475	"
		68	전	1,283	2,989	19,245	"
		67	대	129	480	1,935	"
		66	전	2,003	4,206	30,045	"
		64	잡	122	1,220	1,830	제2야영장
		65	잡	5,537	55,370	83,055	제2야영장

- ☞ 근거 :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(잡종재산의 매각),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호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,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(대금납부와 연납), 동법시행령 제27조(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)

○ 문제점 및 대책

- 도유지 매입시 2006년 1회 추경에 약 7억원을 계상해야 하나, 자원 부족이 예상됨으로 3~10년 분할납부 검토 필요.

#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부지 하진부리 349와 6필



군유재산  
집단화사업부지

하진부리 349와 6필

346 전

347 전

348-6 잡

349-1 전

350 전

351 전

352-1 전

353-1 전

353-2 전

353-3 전

353-4 전

353-5 전

353-6 전

353-7 전

353-8 전

353-9 전

353-10 전

353-11 전

353-12 전

353-13 전

353-14 전

353-15 전

353-16 전

353-17 전

353-18 전

353-19 전

353-20 전

353-21 전

353-22 전

353-23 전

353-24 전

353-25 전

353-26 전

353-27 전

353-28 전

353-29 전

353-30 전

353-31 전

353-32 전

353-33 전

353-34 전

353-35 전

353-36 전

353-37 전

353-38 전

353-39 전

353-40 전

353-41 전

353-42 전

353-43 전

353-44 전

353-45 전

353-46 전

353-47 전

353-48 전

353-49 전

353-50 전

353-51 전

353-52 전

353-53 전

353-54 전

353-55 전

353-56 전

353-57 전

353-58 전

353-59 전

353-60 전

353-61 전

353-62 전

353-63 전

353-64 전

353-65 전

353-66 전

353-67 전

353-68 전

353-69 전

353-70 전

353-71 전

353-72 전

353-73 전

353-74 전

353-75 전

353-76 전

353-77 전

353-78 전

353-79 전

353-80 전

353-81 전

353-82 전

353-83 전

353-84 전

353-85 전

353-86 전

353-87 전

353-88 전

353-89 전

353-90 전

353-91 전

353-92 전

353-93 전

353-94 전

353-95 전

353-96 전

353-97 전

353-98 전

353-99 전

353-100 전

# 토지대장열람조서

<군유재산집단화 사업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 고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m <sup>2</sup> )	성명	주소	
소 계	7필지		3,592			
진부면 하진부리	350-1	잡종지	671	남중기	진부 척천리 87-3	
	351-1	전	67			
	349	대	1,002	진부주류 합동상사	진부 하진부리 349	
	350	대	1,070			
	352-4	대	131			
	353-4	대	317			
	353-27	대	334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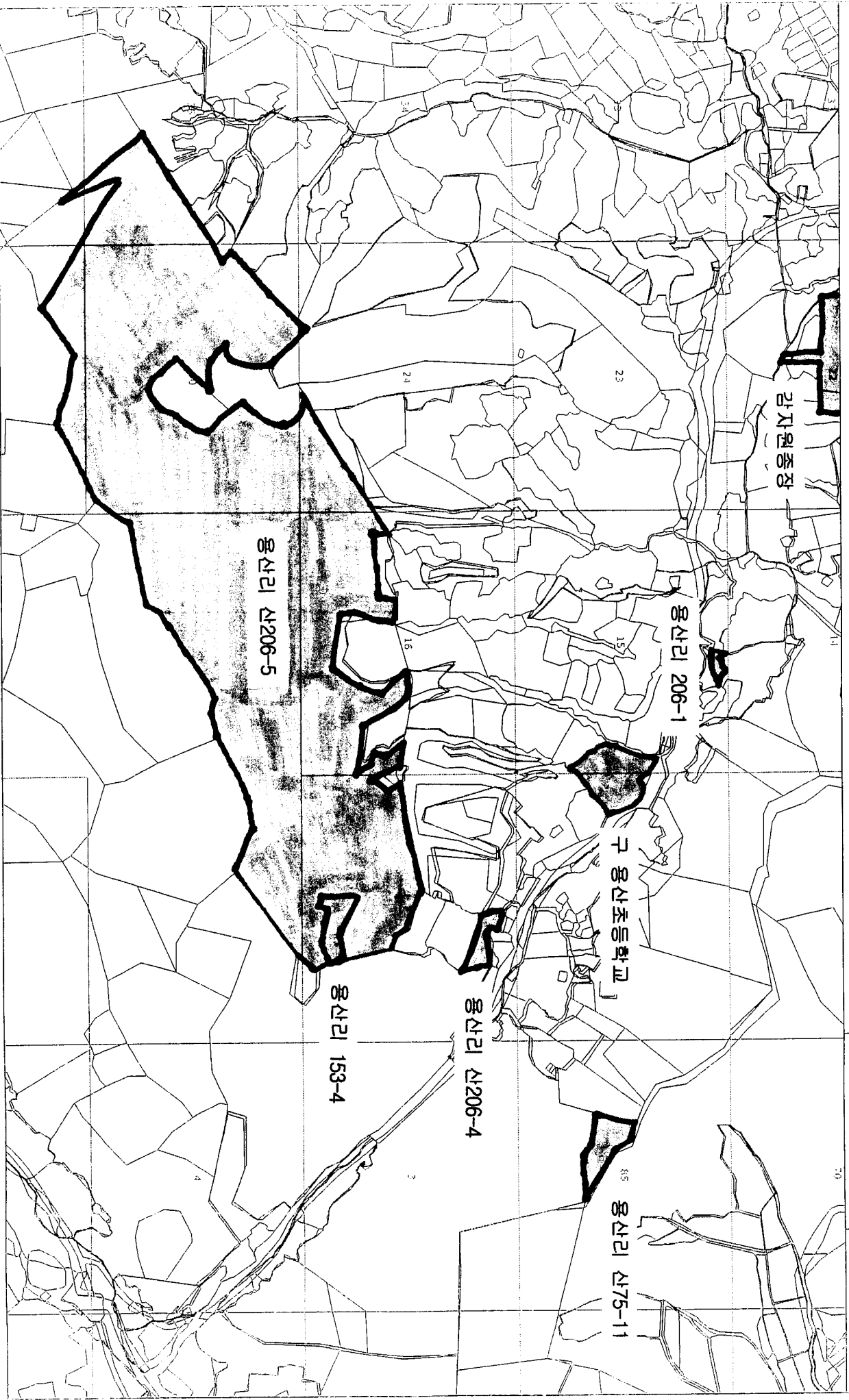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07. 11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**알펜시아리조트 편입 매각 부지**  
 (용산리 153-4번지 외 4필 508,498㎡)

축척 1:9689





# 토지대장열람조서

<알펜시아리조트편입 매각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 고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성명	주소	
소 계	5필지		508,498			
도암면 용산리	153-4	임야	4,493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
	206-1	임야	807			
	산75-11	임야	6,982			
	산206-4	임야	4,379			
	산206-5	임야	491,837		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07. 11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# 강원도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 목 알펜시아 조성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등 손실보상 관련 협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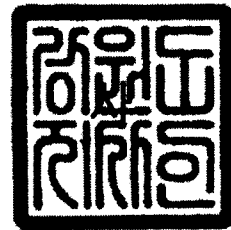
---

1. 강원도개발공사 보상사업600-113(2006.5.2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 강원도개발공사에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알펜시아 조성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도유재산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협의해 옴에 따라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,
3. 도 해당실과(사업소) 및 평창군에서는 소관 도유재산·물품 등에 대한 손실보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후 보상협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, 보상이 완료되면 도유재산에 대한 보상내역(재산의 분류, 소재지, 면적, 보상액 등)을 우리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국유재산 관리처분 및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사본 1부(별송). 끝.

강 원 도 지

수신자 체육청소년과장, 강원도감자원증장장, 평창군수(재무과장)



지방행정주사

박종성

지방행정사무관

이근희

세무회계과장

전결 05/04

문지현

협조자

시행 세무회계과-7979 (2006.05.08.)  
우 200-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 
전화 033)249-2315 전송

접수 재무과-4170  
/ pjs@gwd.go.kr

(2006.05.08.)

/ www.provin.gangwon.kr

/ 공개

고객에게 감동을! 국민에게 이익을!  
강원도개발공사

우232-954 평창군 도암면 횡계 1리 324-15 대관령신협 2층 / 전화 (033)366-8303/전송336-8304  
경영지원본부 평창보상사업소 팀장 : 이정호 담당 : 이충만 (http://www.gdco.co.kr)



문서번호 보상사업 600-113

시행일자 2006.5.2

(경유)

수신 평창군수

참조 재무과장

선결	과장		지시	
접수	일자	2006.5.4	전결	
	시간		다다	
	번호	A27		
	처리과	과무과	공람	
	담당자	최은이		

제 목 국유재산 관리처분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

1.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지구내 편입된 귀청 소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, 협의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협의기간 : 2006. 5.8 ~ 2006. 6.12
2. 협의장소 : 강원도개발공사(춘천시 중앙로 1기 9번지)  
평창보상사업소(평창군 도암면 횡계1리 324-15번지 대관령신협 2층)
3. 보상내역 : 별첨 "보상내역"참조
4. 기 타 : 보상계획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자세하게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.

첨부 : 손실보상 내역 1부 , "끝"

강원도개발공사 사장

17

## 국·공유지 보상 내역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보상가액(원)	비고
	합 계	9필지		510,619	6,049,917,790	
	소 계	5필지		508,498	5,734,468,140	
국유	도암 용산리	153-4	임야	4,493	55,413,660	평창군
	도암 용산리	206-1	임야	807	99,889,990	
	도암 용산리	산75-11	임야	6,982	228,078,660	
	도암 용산리	산206-4	임야	4,379	156,184,330	
	도암 용산리	산206-5	임야	491,837	5,194,901,500	
	소 계	4필지		2,121	315,449,650	
국유	도암 용산리	192-2	대지	369	32,988,260	재경부
	도암 용산리	228-3	전	161	17,495,330	
	도암 용산리	436-5	전	254	14,055,730	
	도암 용산리	167-1	전	1,337	250,910,330	

#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재원 활용계획안

평      창      군

#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재원 활용계획안

- 동계올림픽 지원시설인 알펜시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교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각처분하여야 함
- 이 매각처분 재원 중 공유재산 매각재원을 재투자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함

## ■ 편입 부지 및 평가 내역

○ 총 9필 510,619㎡ 6,049,918천원

- 공유재산 : 5필	508,498㎡	5,734,468천원
* 토 지 : 2필	5,300㎡	155,303천원
* 임 야 : 3필	503,198㎡	5,579,165천원
- 국유재산 : 4필	2,121㎡	315,450천원

## ■ 활용방안 입안 기본방침

- 관계법규 및 매각재원의 성질에 맞게 전액 대체재산 확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하여
  - 06 당초관리계획 승인 취득 재산 중 예산 미확보 및 부족분
  - 현안 투자 사업 중 재산집단화 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큰 사업
  - 올림픽타운 조성 등 2014 동계올림픽관련시설 부지 확보 등
- 3개 유형의 투자사업 부지 확보에 우선적으로 투자

## ■ 매각재원 재투자 활용방안 입안 기본방침

- 당초관리계획 승인 예산 미확보 분 - 32.5억원
  - 올림픽 개최도시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부지  
  도암면 황계리 344-48번지 2,615㎡ - 8억
  - 황계지구 처분 대체재산 취득부지  
  도암면 황계리 344-4번지의외 1필 7,844㎡ - 24억

- 봉평시가지 관문정비사업 부지  
봉평면 창동리 산119-2번지 외 4필 1,620m<sup>2</sup> - 0.5억

○ 현안 투자사업 및 재산집단화 사업 - 9억원

- 진부 체육공원 일원 재산집단화 사업  
진부면 하진부리 349번지외 6필 3,592m<sup>2</sup> - 8억
-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 
용평면 노동리 86번지외 14필 30,591m<sup>2</sup> - 1억

○ 2014동계올림픽 관련시설부지 - 14.5억원

- 올림픽타운 조성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지 확정 계획

국·공유지 편입용지 상세내역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보상가액(원)	비고
합 계		9필지		510,619	6,049,917,790	
소 계		5필지		508,498	5,734,468,140	
군유	도암 용산리	153-4	임야	4,493	55,413,660	재무과
	도암 용산리	206-1	임야	807	99,889,990	
	도암 용산리	산75-11	임야	6,982	228,078,660	산림과
	도암 용산리	산206-4	임야	4,379	156,184,330	
	도암 용산리	산206-5	임야	491,837	5,194,901,500	
소 계		4필지		2,121	315,449,650	
국유	도암 용산리	192-2	대지	369	32,988,260	재경부
	도암 용산리	228-3	전	161	17,495,330	
	도암 용산리	436-5	전	254	14,055,730	
	도암 용산리	167-1	전	1,337	250,910,330	

# 관 계 법 령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이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및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



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